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)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6. 5. 29



1. 공고기간 : 2026.5.29. ~ 2026. 6. 30.
2. 공고 대상자 및 사유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발급기간	공고사유
1	윤*별	2009.05.10.	2026.6.1.~2027.5.31.	폐문부재
2	한*민	2009.05.19.	2026.6.1.~2027.5.31.	폐문부재
3	정*인	2009.05.02.	2026.6.1.~2027.5.31.	폐문부재

3. 안내

- 가.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발급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하오니 , 사진 1매 (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가로 3.5cm×4.5cm 탈모상반신 사진)를 지참하고 발급기간 안에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소명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산동 주민등록 담당(☎031-5189-460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 40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